고흥군의회 공고 제2022-15호

「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2년 8월 16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○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 자문위원회와 의회 간 유대관계 및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함을 물론 발전된 자문위원회 정립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위원회 구성 및 당연직 위원 위촉 규정을 개정

○ 위원회 회의시기를 정기 회기에서 필요시로 개정

3. 개정조례안: 별도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2. 8. 16. ~ 2022. 8. 20.(5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
2) 전화 : 061-830-6065, 팩스 : 061-830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1부.
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20명”을 “1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같은 조 제3항 중 “의정담당”을 “의사팀장”으로 한다.
같은 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변경한다.

제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정기회는 매년2회(상,하반기별)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구성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 13명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 위원장은 의장이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 ---- ----------.-- ---------- ----------.--- ---------- ----------.
③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의정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의사팀장--------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3. (현행 제3호 생략, 제4호를 제3호로 변경)
제5조(위촉)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	제5조(위촉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<신 설>	1.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

	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.
1. ~ 3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7조(회의) ① 정기회는 매년 4회(분기별) 개최하며, 임시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	제7조(회의) ① 정기회는 매년2회(상,하반기별)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